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4. 27 선고 2019가단24074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우승

피고1. D

2. E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건우

담당변호사 김성민

변론 종결 2021. 3. 30.

판결 선고 2021. 4. 27.

주 문

1.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 D와 F 사이에 F의 G에 대한 30,000,000원의 반환청구채권에 관하여 2016. 10.

31.자로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F가 피고 E에게 한 2016. 10. 31.자 30,000,000원 변제행위를 취소한다. 피고 E은 원고들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父), 원고 B는 망인의 모(母)이고, 원고 C은 망인의 동생이다.

나. 망인은 2016. 9. 24. 16:40경 F(피고 D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카센터(서울 금천구 I에 있는 J 시흥점, 이하 '이 사건 정비업소'라 한다)에서 승용차 내비게이션 수리를 요청하였고, 이에 F와 직원들이 망인에게 내비게이션 수리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으나, 망인은 계속하여 수리를 요구하였다. F는 2016. 9. 24. 17:20경 이 사건 정비업소에서 나와 술을 마시던 중 18:00경 직원으로부터 망인이 계속하여 내비게이션의 수리 요구를 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18:35경 이 사건 정비업소로 되돌아 온 다음, 망인이 직원과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망인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8:37경 이 사건 정비업소 사무실에 휘발류를 준비하고, 직원에게 공장 쪽방 범셔터 3개와 사무실 쪽 방범셔터 1개를 내리게 한 후 18:40경 망인과 함께 사무실로 들어가 사무실 쪽의 방범셔터를 내리고 준비한 휘발류를 공장 바닥과 기계에 뿌린 다음 망인을 잡고 공장 안으로 끌고 들어가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공장 밖으로 혼자 나오면서 그 출입문을 시정하였다. 불길이 바닥과 기계 등으로 번져 공장 내부가 연소되었고, 망인은 곧바로 공장 밖으로 나오지 못하여 온몸에 불이 붙어 화상을 입었으며, 후에 스스로 창문을 깨고 탈출하여 K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나 2016. 9. 25. 97%의 화염화상 및 흡입화상으로 인한 화상쇼크로 사망하였다.

다. F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에 관하여 망인에 대한 현존건조물방화치사죄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합486호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위 법원은 2017. 1. 13. 피고 F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 F가 서울고등법원 2017노353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7. 5. 26.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 F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피고 F가 대법원 2017도8463호로 상고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7. 8. 18. 상고를 기각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들은 2017. 4. 4. F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22858호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5. 24. 'F는 원고 A, B에게 각 283,172,092원, 원고 C에게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들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18. 7. 19. 확정되었다.

마. F는 망인의 사망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정비업소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제외하면, 일부 소액(3,200,625원 및 740,819원)의 예금 외에는 아무런 재산이 없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

바. F는 2006년경 이 사건 정비업소의 소유자인 G와 위 정비업소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위 임대차의 월차임은 140만 원으로 증액되었다. 망인의 사망 이후 F의 요구로 G는 F와의 이 사건 정비업소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2016. 10. 31. 10:07경 위 보증금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 한다)을 피고 D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사. 피고 D은 2016. 10. 31. 13:01경 이 사건 보증금을 피고 E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아. 피고 E은 2002년부터 이 사건 정비업소에서 근무하다 2016. 9. 30.경 퇴직하였다. 피고 E은 2016. 10. 31. 13:25경 임대인 G에게 이 사건 보증금을 지급한 다음 F와의 종전 임대차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월차임을 지급하며 같은 장소에서 'L'로 상호만 바꿔 이 사건 정비업소와 동일한 형태의 정비업소를 운영하다가 2017. 4. 30.경 G와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 200만 원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4, 7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F가 망인을 사망케 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원고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이 사건 정비업소의 보증금반환채권을 피고 D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F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위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 D이 이를 피고 E에게 입금시켜 주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으므로, 피고 D은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위 3,000만 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고, 전득자인 피고 E 역시 피고 D과 연대하여 위 금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보증금 3,000만 원과 관련한 입출금이 짧은 시간 내에 곧바로 이루어진 점, ② 피고 D이 피고 E에게 아무런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아니하여 F의 요청이 아니라면 이 사건 보증금을 피고 E에게 송금할 이유가 없는 점, ③ 달리 피고 D과 F 사이에 이 사건 보증금 관련 채권을 양도하여야 할 금전관계가 존재하였다고 볼 사정도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 D으로서의 구속으로 인하여 은행업무를 볼 수 없었던 F의 부탁 내지 요청에 따라 단순히 F의 사자(使者)로서 이 사건 보증금을 피고 E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 F와 피고 D 사이에 이 사건 보증금 관련 채권양도 행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비록 이 사건 보증금이 변제행위로 피고 E에게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정비업소의 사업주인 F와 그 직원인 피고 E이 사후적으로 퇴직금청구권을 발생시킨 다음, F의 불법행위(방화범죄)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채권을 해할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보증금을 변제하였으므로, F와 피고 E이 적극적으로 통모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E은 수익자로서 위 사해행위를 취소한 원고들에게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안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는 경우라도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지는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이 같은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6603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 내지 채권양도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6082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E이 이 사건 정비업소의 직원으로서 F의 불법행위를 알고 있었다는 점 외에 다른 채권자인 원고들을 해할 의사를 가지고 F와 통모하여 이 사건 보증금으로 퇴직금 채권을 변제받은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추진석